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단52182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487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단5218250 판결

전문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김가해, 정형윤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21. 4. 29.

판결 선고 2021. 5. 27.

주문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21,398,866원 및 그 중 21,139,021원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2019. 11. 16.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2018. 8. 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8. 8. 8. 접수 제 1582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8. 5. 14. 피고 주식회사 A('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가 소외 D은행('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발생하는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 아래 -

보증번호 : E

보증원금 : 20,800,000원

보증기한 : 2019. 5. 14.

보증방법 : 개별보증

대출과목 : 기업일반자금대출

보증비율 : 100%

보증상대처 : D은행 가산디지털역지점

대출예정금액 : 20,800,000원

피보증인 : 주식회사 A

연대보증인 : 피고 B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5조는 원고가 사전구상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이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나. 피고 회사의 대출채무 불이행과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여신거래약정을 통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2018. 10. 16. 이자를 연체하였다.

2) 원고는 2019. 2. 13. 소외 은행에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원금 20,800,000원과 이자 339,021원의 합계금 21,139,021원을 변제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하면서 원고의 구상권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하여 가지급한 보험료 및 법적 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금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비용은 259,845원이다.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연 25%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일인 2019. 2. 13.부터 적용하는 원고의 이사회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0%이다.

다. 피고 B의 재산 처분행위

1) 피고 B은 2018. 8. 6.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8. 8.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58265호로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을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피고 B은 2018. 8. 6. 당시 소극재산으로서, ① F은행에 24,083,000원 ② G에 14,597,000원 ③ H에 37,200,000원 ④ I에 29,465,000원 ⑤ J은행 가산벤처점에 20,000,000원 ⑥ J은행 백석역점에 153,500,000원 ⑦ J은행 역삼중앙점에 70,500,000원 ⑧ 원고가 신용보증을 한 D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원금 20,800,000원 등 합계 370,145,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적극재산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고, 당시 그 시가는 340,000,000원 정도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피고 B은 2018. 9. 19. 수원지방법원에 2018개회57982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는 2021. 3. 17. 폐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 및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K기관의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악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18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취하한 이후에도 피고 B을 피고로 남겨두었고 이에 따라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 B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이지는 하나 설정자로서 채무자이므로 그를 상대로 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3.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소외은행에 대위변제한 21,139,021원과 대지급금 259,845원의 합계 21,398,866원과 그 중 21,139,021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9. 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9. 11. 16.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사해행위에 있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①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연대보증을 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2019. 2. 13.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것이지만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약정은 2018. 5. 14. 체결되었고, 피고 회사는 2018. 10. 16.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2018. 8. 6.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청구와 관련하여 위 구상금 채권은 그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불과 1개월 여 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B의 무자력

피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470,145,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적극재산으로서는 시가 34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등

1) 피고 B이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의 채권자 중의 1인인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C를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2) 그러나, 피고 C은 자신이 피고 B에게 2012. 11.경부터 금원을 대여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하였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일인 2018. 8. 6. 현금 3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이를 포함한 채권액인 1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후 경위에 비추어 피고 B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다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8. 4. 7.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9.까지 5회에 걸쳐서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위와 같은 대여금채권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일인 2018. 8. 6. 현금 3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와 같이 당시까지 대여한 금액의 합계인 10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거래의 개시 시점과 이후 그 거래가 지속된 현황 및 무자력인 채무자에게 추가로 30,000,000원을 대여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채무자인 피고 B이 무자력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선의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악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영일

별지